

의안번호	2126167
의 퇴 인	안민석 의원
회 답 일	2024.01.23.
추계번호	24C001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학교복합시설”이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제1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유아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재량규정
3	안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제4항)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재량규정
4	안 제9조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정책 관련 자료개발·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학교복합시설 관련 자료조사·연구 4. 학교복합시설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5. 학교복합시설 관련 연수·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6.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 8.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재량규정 의무규정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항)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항)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항) 지원센터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0조의3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교복합시설의 전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수익에 관한 수입·지출 및 회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의무규정
7	부칙 안 제3조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의 설립준비)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무규정

		를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항) 설립 당시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다.	
--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²⁾	미첨부 근거 규정 등
1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제1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안 제9조 및 부칙 안 제3조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안 제10조의3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가능대상 확대’와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내용임

- 1) 안 제6조제4항(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재정변동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 안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총사업비 중 3,02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임³⁾

□ 개정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이 추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교육부는 이미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대상으로 유·초·중등학교, 폐교 시설·부지 등을 포함하였으며, 최종 사업 대상 중 하나로 경북 김천시의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15,00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 또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대학 간 MOU를 통한 학교복합시설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 2023.5. 교육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가톨릭대는 학교복합시설(하양아트센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투자재원의 다양화 등을 하기로 함

○ 다만, 향후 학교복합시설로 지정될 구체적 ‘대학’ 수나 사업규모, 예산내역 등을 포함하여 향후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법 제3조 및 제10조, 개정안 제1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구체적 내역을 예측하기 어려움

- 현행법 제3조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와 학교복합시설 설치로 인한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0조⁵⁾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정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3) 교육부 보도자료 (2023.12.19.)

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9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조직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 추계가 어려움⁶⁾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존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로 센터 내 ‘학교복합시설지원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2,68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 (주요업무) 학교복합시설 정책 및 제도개선지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 공모 사업 컨설팅 용역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수요분석 시스템 개발, 정책연구 및 자료집 개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칙 안 제2조에 따라 동 센터는 전문기관의 지정이 해제되고, 부칙 안 제3조에 따라 이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역시 개정안에 따른 센터로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기존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의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 및 기타 설립될 하부조직 등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어려워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0조의 3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될 경우 관련 추가재정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용허가될 공유재산 및 수입의 규모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6) 부칙 안 제3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유발될 수 있으나, 부칙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수가 3명 이내라는 점을 고려시 관련 비용은 기존 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